

< 공사 고유 직무내용을 반영한 평가문항 샘플 >

※ 본 문항은 예시 문항이며, 실제 필기전형 문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1. 다음 제시된 ‘집단에너지사업법’과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단에너지”란 2개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2. “사업”이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자”란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집단에너지를 공급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집단에너지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공급시설과 사용시설을 말한다.
6. “공급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시설로서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사용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사용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열생산자”란 열을 생산하거나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사업의 구분 및 기준)

- ① 법 제2조제2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구분 및 그 사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냉난방사업: 난방용, 급탕용, 냉방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5백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2.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산업단지에 공정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3천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 ② 제1항의 사업에 있어서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가스를 연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시설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열생산용량이 전기생산용량보다 클 것
 2. 에너지효율(투입된 에너지 대비 그 에너지로 생산된 열 및 전기 에너지의 비율을 말한다)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 ① “공급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수송·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 ②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은 자가소비량을 포함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3천만킬로칼로리 이상이어야 한다.
- ③ 집단에너지시설은 2개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 생산시설이다.
- ④ “사업자”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를 말한다.
- ⑤ 가스를 연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시설은 열생산용량이 전기생산용량보다 크지 않아도 된다.

02. 다음 제시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연구과제 공모 안내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

중소기업지원[동반성장] 연구과제 공모 안내

1. 과제공모 방법

가. 참여대상

- 중소기업: 집단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
- 기타기관: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컨소시엄에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기관

나. 주요 공모과제

- 집단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연구과제

다. 공모방법

- 온라인: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공모 게시
- 오프라인: 집단에너지 관련 유관기관에 공문/이메일 발송

라. 공모기간 및 과제접수

- 공모기간: '○○.8.2.(목) ~ '○○.8.31.(목)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기간에 상관없이 수시 공모
- 접수방법: 제안서 이메일 접수

2. 중소기업 지원 연구과제 유형

- **유형1)**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 우리공사의 구매를 전제로 우리공사가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의 신제품 및 국산화 개발 과제를 정부(중소기업청)와 1:1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최대 2년간 10억 원)
 - 연구비 구성: 우리공사 37.5% 이내, 정부 37.5% 이내, 중소기업 25% 이상
 - 의무구매액: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
- **유형2)**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국내수요처)
 - 우리공사가 일정량 이상의 구매 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하여 정부(중소기업청)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최대 2년간 5억 원)
 - 연구비 구성: 우리공사 15% 이내(현금 20% 이상), 정부 60% 이내, 중소기업 25% 이상(현금 60% 이상)
 - 의무구매액: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
- **유형3)** 협력 연구개발사업
 - 우리공사의 구매를 전제로 연구개발자원과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자원을 상호 결합하여 우리공사에 꼭 필요한 기술을 중소기업을 통해 개발하는 사업
 - 연구비 구성: 우리공사 75%, 중소기업 25%, 정부 0%(공사 자체 사업)
- **유형4)** 수위탁기업간 네트워크형 공동사업(구. 원가절감형 공동사업)
 - 과제 수행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로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고 그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사업(최대 7개월간 1억 원)
 - 연구비 구성: 우리공사 30%(현금 20% 이상), 정부 50%, 중소기업 20%(현금 25% 이상)

- ① 제시된 자료의 연구과제는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
- ② 유형2와 유형3 과제의 차이는 공사의 의무구매 여부에 있다.
- ③ 모든 유형 중 공사 자체 사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의 연구비 구성 비율이 가장 낮다.
- ④ 유형4 과제의 경우 과제 수행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원가경쟁력 확보 등에 목적을 둔다.
- ⑤ 정부와 1:1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과제 유형의 의무구매액은 최대 4억 원 이상이다.